

I. 개요

□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환경부고시 제2020-40호(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 목적

- 목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시설 :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방조망 등
- 사 업 비 : 190,000천원(38농가 지원가능)
(보조금 114,000천원, 자부담 76,000천원)
- 신청기간 : 2021.01.13.(수) ~ 01.29.(금)(13일간)
- 접 수 처 : 농경지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

II. 지원기준

□ 지원범위

- 사업비의 60%(농가당 최대 지원액 3,000천원)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
-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제외

□ 2021년 기준단가

- 전기·태양광 목책기 : 2,650천원/440m
 - 기준단가 계산식 : $900,000\text{원} + [(400,000\text{원}/440\text{m}) \times \text{사업량(m)}] + (1,350,000\text{원}/440\text{m}) \times \text{사업량(m)}$
- 철망 울타리 : 15천원/m

□ 우선지원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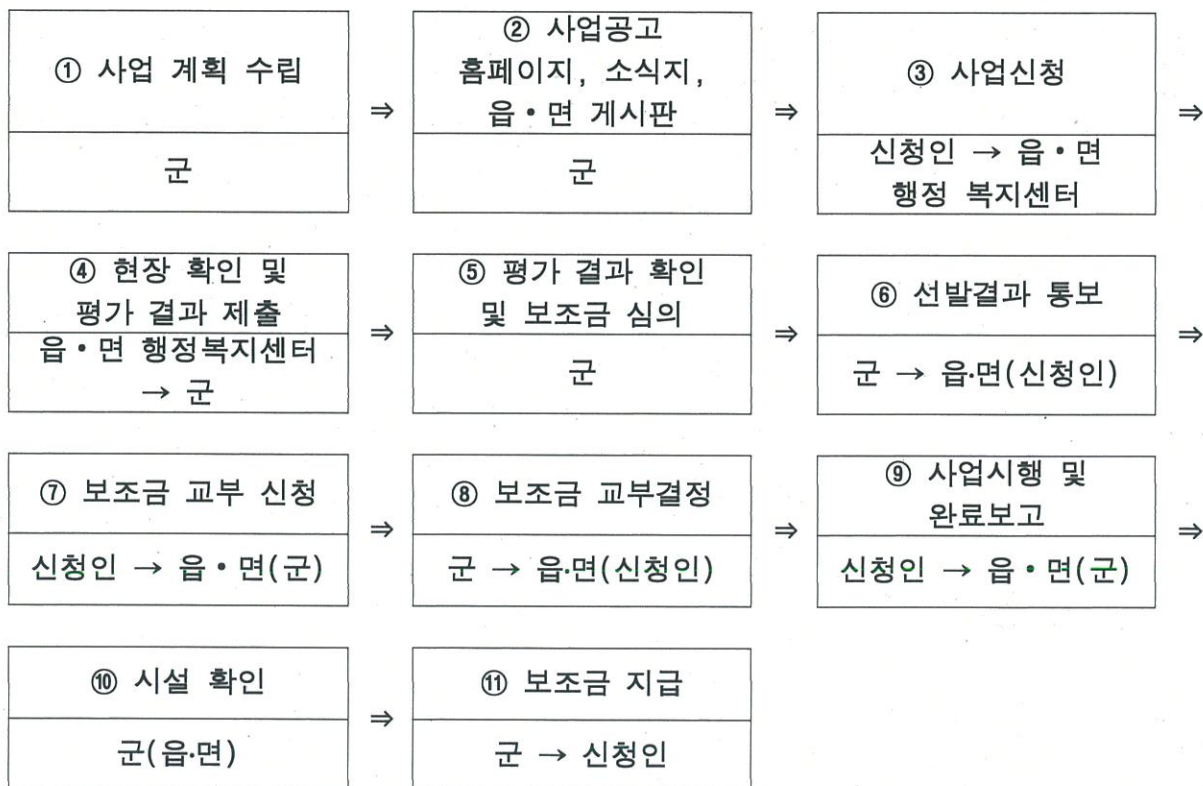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 연접 농경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역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Ⅲ. 선발기준 및 절차

□ 선발기준

- 신청자 중 심사 기준에 의거 선발 - 별표3
- 선발결과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별 통지

□ 선발절차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IV. 추진일정

☐ 2021. 01.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2021. 01. ~ 02. :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 2021. 02. ~ 05. : 피해예방시설 설치

☐ 2021. 05. ~ 07. : 정산보고

- 보조사업자 : 정산보고서, 계약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설치비 납입 증빙자료, 시설 설치 전·후 사진대지, 신청인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읍면담당자 : 출장복명서, 설치현황조사서

V. 최종 선발자 준수사항

☐ 피해예방시설의 규격은 규정된 규격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함.

☐ 피해예방시설의 사업량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피해예방시설 현장 확인 결과 신청 내역과 상이할 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하여야 함.

VI. 홍보사항

☐ 현수막 제작 : 15개소(읍3개소 면 12개소)

☐ 군청 및 읍·면 홈페이지 공고

☐ 보도자료 및 마을 방송 등

[붙임1]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역				
	군 면 리 번지				
	종류 전기식 목책기 ☐ 팜 캡 스 ☐ 기타() ☐ 태양광식 전기목책기 ☐ 철조망울타리 ☐				
	설치기간 ~ (일간)				
설치비용			지원금액(설치비용의 6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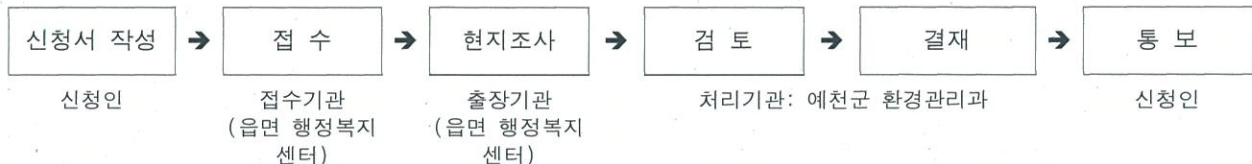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4. 임대경작인인 경우 시설설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지원 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사유서

☐ 신청인 :

☐ 주소 :

☐ 신청사유

○ 농지위치 : (임야 이격거리 : m)

○ 경작작물 :

○ 경작면적 : m² (지적 : m², 지목 :)

○ 가해동물 :

○ 신청사유 : 상기 본인은 위 소재 농지에서 경작하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하게 되었음.

위와 같은 사유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코자 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천군수 귀하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 설치장소

신청지 위성지도 [사업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거리표시]	신청지 현장전경 [주변 확인이 가능하도록]
--	------------------------------------

☐ 사업량 : 농지면적 m², 사업량(예상) m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천원, 자부담 : 천원)

□ 사업기간 : 2021년 월 ~ 월까지

☐ 사업계획

- 2021. 월 : 사업계획 확정
- 2021. 월 ~ 월 : 공사시행
- 2021. 월 : 사업비 정산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천 군 수 귀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

☐ 피해예방시설 설치자(경작자)

○ 주 소 :

○ 성 명 :

☐ 토지현황

(단위 m²)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m ²)	경작자와 관 계	비 고

상기 토지에 예천군에서 추진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시설의 종류 기재**)의 설치 및 향후 5년간 지원목적대로 사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토지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예 천 군 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예천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및 이용 목적

- 예천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결격사유 조회 포함)

나.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자격·면허 소지사항 등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3.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피해방지단 선정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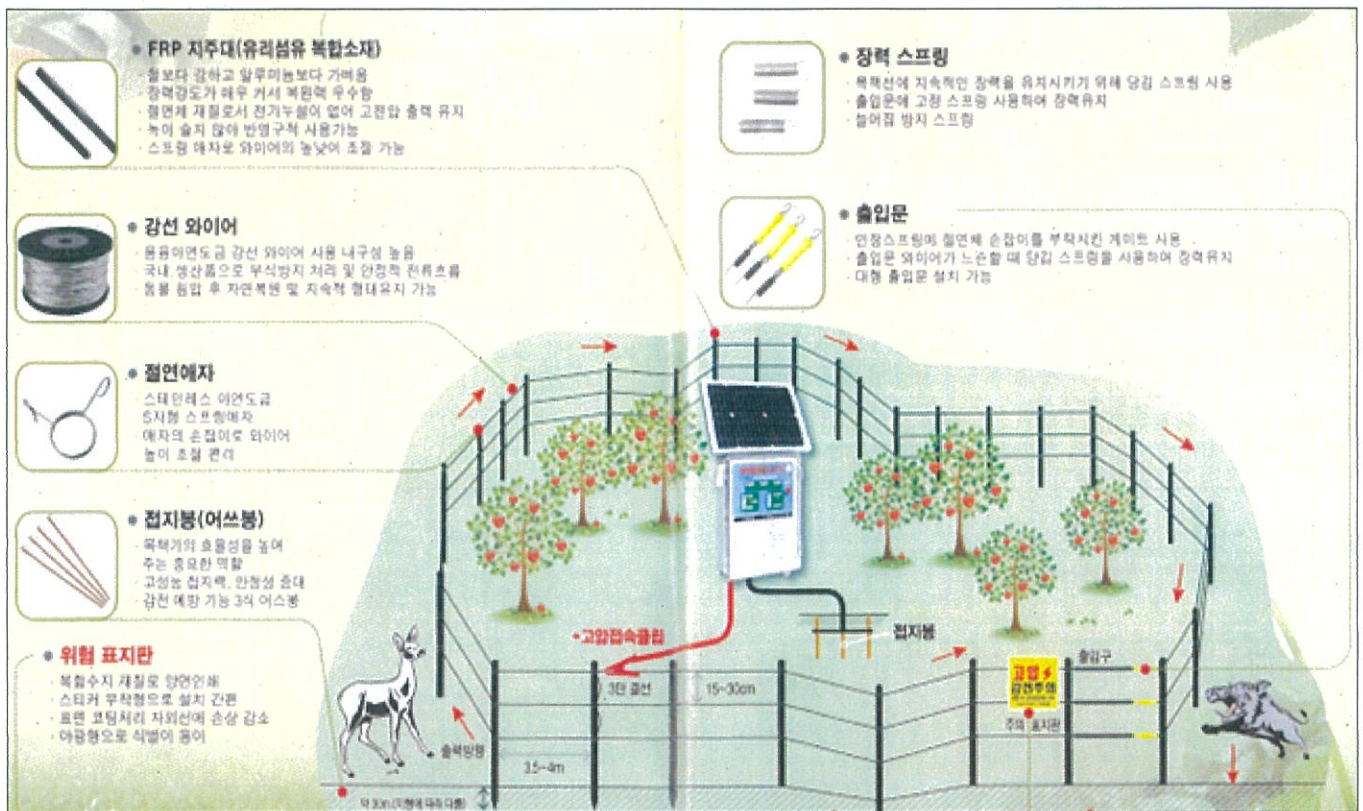
심사기준

점수표 선정기준	10	8	6	4	2
피해발생현황	5년연속	4년연속	3년연속	2년연속	1년
보호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산림연접	산림인접 100m이내	산림인접 200m이내	산림인접 200m이상
가해동물	멸종위기종	멧돼지	고라니	조류	기타
자구노력	철조망, 방조망설치	경음기, 경광등설치	울타리설치	울타리설치 (훼손)	반사필름, 노끈설치
영세농가(농지원부)	10,000m ² 이하 임차영농	10,000m ² 이하 자경	20,000m ² 이하 임차 및 자경	30,000m ² 이하 임차 및 자경	30,000m ² 이상 임차및자경
신청자 연령대	60대이상	50대이상	40대이상	40대이하	-
연접농경지 피해예방시설 설치여부	100m이내	200m이내	300m이내	400m이내	기타
농지원부 최초작성시기 및 본인경작기간	10년이상	7년이상	4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 가점 : 연접한 2개 이상의 농가가 공동설치하는 경우
 - 5농가 이상 : 20점, 4농가 : 16점, 3농가 12점, 2농가 8점

※ 동일 점수일 경우는 영세농가 1순위, 연령대 2순위, 장기농업종사자 3순위 선정

[참고자료]



전기목책 설치예시



철망울타리 설치예시



방조망 설치예시



팜캡스 설치예시